

중국기업, 국제적 지재권보호에 관심 증대

중국기업을 상대하는 서구 법률회사들은 중국정부와 중국기업의 지재권에 대한 관심 증대에 유의하고 있음. 이들은 선진국 기업들의 지재권소송제기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지재권창출과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고 거대한 자국시장의 이점을 이용하여 지재권분야에서의 유리한 지위를 점하려는 시도가 보임.

최 근 열린 Paul Hastings 법률회사 주최 지재권 관련 세미나에서 Lou Qinjian 중국 정보공업성 차관은 중국기업의 지재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중국기업들의 기술적 성취를 보호받기 위해서 보다 많은 중국기업들이 지재권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그 동안 주로 지재권침해의 비난을 받으며 피고인의 지위에 서던 중국기업들의 지재권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서구 법률회사들은 판단하고 있다. 영국 법률회사 Paul, Weiss and Garrison의 Jeanette Chan 변호사에 따르면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이후 중국기업의 국제특허출원은 급증하고 있으며 2004년

들어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중국의 PCT 국제특허출원은 2003년 전체 PCT출원 11만여 건 중 1,205건에 지나지 않으나 서구의 법률가들은 중국기업들이 국제적인 지재권소송을 제기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의 근거에는 Huawei, ZTE 등 중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제특허출원 등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등 기업 자신들의 노력 뿐 아니라 중국정부가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의 이점을 활용하여 기술표준 등을 자국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정하고 이러한 기술개발의 이점을 중국기업들이 이용하는 등의 환경적 이유가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특허시스템에 대한 비판제기

미국의 한 특허법 전문가는 미국특허시스템이 컴퓨터프로그램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함.

미국의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와 Brookings Institute's Joint Center는 공동으로 「신산업에 있어서의 지재권」이라는 제목으로 워싱턴 D.C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동 심포지움에서 미네소타 법

캐나다 상원, 개도국을 위한 일반의약품법안 승인에정

캐나다는 일반의약품 제조회사가 특허의약품에 비해 싼 일반의약품을 생산하여 AIDS 등 심각한 전염병과 씨름하고 있는 개도국으로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법을 상원에서 통과시킬 예정임.

캐나다 하원에서는 지난 5월 4일 특허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빈곤국가(주로 아프리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약회사에게 일반의약품을 생산,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법안은 캐나다로의 재수입 혹은 암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별한 마크와 포장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떤 의

약품이 어떤 국가로 수입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List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AIDS로 인해 크게 타격을 입은 개도국에서 일반의약품 제조회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HIV 항레트로 바이러스 의약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약 50개국이 캐나다회사로부터 저렴한 의약품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대학 교수인 Dan L. Burk는 반도체보호법과 같이 특정기술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개별법을 만드는 경우 법안이 성안됨과 동시에 법안의 내용이 발전하는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쓸모없어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기술에 대해서 기존의 특허법으로 보호하되, 많은 투자가 필요한 기술분야는 권리범위를 넓혀주고, 그렇지 않은 기술분야는 반대로 권리범위를 좁혀 주는 방법으로 법해석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에 대한 미국 특허법시스템은 정반대로 운영되고 있다. 즉 비자명성 기준이 높아서 특허받기가 어려

운 반면에 특허가 허용된 발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넓은 권리범위를 주고 있다.

동 분야 기술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특허기준은 낮추어 특허 획득이 쉽게하되 권리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 교수는, 1990년 CAFC 판례인 Northern Telecom v Datapoint에서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출원자는 발명의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발명의 공개요건(disclosure barrier)"을 충족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지나치게 권리범위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제공 지식재산권연구센터